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수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 함(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).
-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9조).
-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(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9조제1항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매함으로써 농산물 과잉생산 상황에서의 생산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, 농산물의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과소생산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 안 제9조제1항은 가격안정 뿐 아니라 수급안정도 생산자 보호조치의 목적으로 명시하고, 생산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‘농산물의 수매’에서 ‘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그런데, 제9조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제14조¹⁾는 안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취지에 맞게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제14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, 법 제9조제1항 단서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는 사유로 ‘가격안정’뿐만 아니라 ‘수급안정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1) 조문제목 포함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조(가격 예시) ① ~ ③ (생략)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(支持)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<u>제9조 또는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</u> 4. 5. (생략)	제8조(가격 예시) ① ~ ③ (생략) ④ (현행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) 1. 2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4. 5. (현행과 같음)	제8조(가격 예시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음) 1. 2. (개정안과 같음) 3. <u>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 및 처분</u> 또는 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. 5.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(과잉생산 시 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<u>채소류</u> <u>등 저장성이 없는</u> <u>농산물의</u>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으로 해 당 <u>농산물을 수매</u> <u>할 수 있다.</u> 다만, <u>가격안정</u> 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는 도매시장 또는 공 판장에서 해당 농 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	제9조(수급불안 시 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<u>농수산</u> <u>물수급계획의 수</u> <u>립·시행에도 불</u> <u>구하고 농산물의</u> <u>수급 및</u>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생산자 또 는 생산자단체로 부터 제54조에 따 른 농산물가격안 정기금으로 해당 <u>농산물의 수매 등</u> <u>필요한 지원을 할</u> <u>수 있다.</u> 다만, <u>가</u> <u>격안정</u>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매시장 또는 공판 장에서 해당 농산 물을 수매할 수 있다.	제9조(수급불안 시 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<u>농수산</u> <u>물수급계획의 수</u> <u>립·시행에도 불</u> <u>구하고 농산물의</u> <u>수급안정 또는</u> 가격안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 자단체로부터 제5 4조에 따른 농산 물가격안정기금으 로 해당 <u>농산물의</u> <u>수매 등 필요한</u> <u>지원을 할 수 있</u> <u>다.</u> 다만, <u>수급안</u> <u>정 또는 가격안</u> <u>정</u> 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도매시 장 또는 공판장에 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② ~ ⑤ (생략) 제14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</u> 생기는 감모(減耗), 가격 하락, 판매·수출·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·포장·방제(防除)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.	② ~ ⑥ (생략) 제14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(현행과 같음)	② ~ ⑥ (개정안과 같음) 제14조(<u>수급불안</u>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제9조에 따른 수매 등 필요한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</u> 생기는 감모(減耗), 가격 하락, 판매·수출·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·포장·방제(防除)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.

○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